

이것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英國의 橋梁만 해도 금년이 100周年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단장을 잘해 놨어요, 이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觀光客이 오면 그 橋梁을 背景으로 해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觀光客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外國에 나가도 都市가 그런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建物을 짓든지 橋梁을 하든지 어떤 構造物을 짓더라도 그것이 歷史性과 또 藝術性과 또 觀光 次元에서 모든 것을 뜻을 두고 設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의 모든 施設物도 앞으로는 그런 觀點에 의해서 모든 것을 設計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年次的으로 그런 事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觀點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條例改正案에 대해서 質疑 應答이 있었지만, 說明이 納得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時代가 變遷됨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것이 變化되고 있어요. 建築에도 建築의 分野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分野의 專門性을 介入을 해서 專門家를 모셔서 구체적으로 견고한 施設을 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기에 때문에 저는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 각 委員님들도 아마 그런 點에서 理解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에 條例를 改正해서 專門人을 모셔 놓고 훌륭한 모든 構造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 條例改正은 時宜適切한 條例改正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몇 말씀 參考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車在國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議事日程 第1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建設技術

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장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20인 이내”를 “150인 이내”로, 동조제2항중 “위촉한다”를 “위촉한 자로 한다”로, 동조제3항중 “위원장이 지명한”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으로, 동조제3호중 “시장,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기타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3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동조제4항중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명한다”를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중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를 “관계공무원을 회의에”로 한다.

⑤ 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를 완료할 때, 다만, 기

<p>본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할 때.</p> <p>2.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p> <p>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p> <p>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p> <p>제7조제1항중 “제7조”를 “제6조”로 한다.</p> <p>제9조제4항중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p> <p>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실시설계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기본설계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심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p> <p>○委員長代理 車在國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p> <p>同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 建設資材事業所를 廢止하려는 案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政府의 작지만 強力한 政府를 표방하면서 비효율적인 建設資材事業所를 廢止하려는 案件인데요, 우리가 직접 訪問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結果論的으로 여기에 所屬되어 있는 公務員들의 事後處理는 어떻게 됩니까?</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여기 勤務하고 있는 職員은 두 職種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一般職인 경우에는 다른 缺員處에다 補職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技能職이 問題입니다. 그래서 技能職에 대해서는 行政이 專門化 내지는 細分化되어 가기 때문에 建設資材 生産을 위해서 일하시던 技能職에 대해서도 그 專門分野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전부 身上에 不利益處分이 안 생기도록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p> <p>○鄭興鎮委員 그럼 企劃室長님, 지난 번에 우리 市議會에서, 事務處設置條例에서 增員을 要請하는 問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條例를 通過시켰는데, 그런데 지금도 감감 무소식이란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公報室 등을 포함해서 增員을 要請한 바 있었습니까.</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것은 事務處 意見으로서 왔고.....</p> <p>○鄭興鎮委員 意見이 아니에요.</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增員要求案은 봤습니다.</p> <p>○鄭興鎮委員 그런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란 말씀이에요.</p> <p>○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市の 定員 運營에 대해서 조금 더 檢討를 하고 措置를 하려고 합니다.</p>
--	---